
2022 윤리감사 보고서

2023. 02. 23.



감 사 실

목 차

| | |
|------------------------------|----|
| I. 윤리감사 개요 | 1 |
| ① 감사실시 근거 | 1 |
| ② 윤리감사 대상 및 주요내용 | 1 |
| ③ 윤리감사 보고의무 | 1 |
| II. 항목별 추진실적 | 2 |
| ① 제13조(윤리행동강령) | 2 |
| ② 제14조(임직원의 재산등록) | 7 |
| ③ 제15조(임직원의 취업제한) | 8 |
| ④ 제16조(부당한 정보제공·이용 금지) | 10 |
| ⑤ 제17조(영리 업무의 금지) | 13 |
| ⑥ 제18조(협력업체의 행위제한) | 15 |
| III. 2023년도 윤리감사 계획 | 17 |
| 붙임 : 2022년도 자체감사 실적 | 19 |

① 감사실시 근거

-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이하 ‘원전감독법’, 제정 2014.12.30., 시행 2015.07.01.)
- 공공기관 감사 : 윤리감사 시행 후 결과를 산업부 장관에게 보고 의무

② 윤리감사 대상 및 주요내용

- 「원전감독법」 제19조(윤리감사)에 따라 감사는 제13조~제18조의 임직원 협력업체의 준수 의무 등에 관하여 정기/수시 감사 보고
- 윤리감사 대상 및 주요 내용

| 대 상 | 준 수 내 용 |
|------------------------------|---|
| (제13조) 윤리행동강령 | ▶ 윤리행동강령의 제정 및 공개, 준수 여부 |
| (제14조) 임직원의 재산등록 | ▶ 2직급 이상 직원의 재산등록 이행 여부 |
| (제15조) 임직원의 취업 제한 | ▶ 퇴직 후 3년간 업무와 밀접한 기관 취업 제한 (재산등록 의무자) 위반 여부 |
| (제16조) 부당한 정보제공· 이용 금지 | ▶ 사적이익 추구 및 특혜 목적의 정보제공·이용 금지 위반 여부 |
| (제17조) 영리 업무의 금지 | ▶ 직무 외 영리 목적의 업무 종사 금지 위반 여부 |
| (제18조) 협력업체의 행위 제한 | ▶ 협력업체의 행위 제한(뇌물 등 공여, 부당한 원전 정보 취득 및 이용, 품질 문서 위·변조 등) 위반 여부 및 후속 조치(등록취소/입찰 제한) 적정성 |

③ 윤리감사 보고의무

- 윤리감사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행한 후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보고(매년 2월)하고 홈페이지 등에 공개

① 제13조(윤리행동강령)

가. 관련법령 및 사규

- 「원전감독법」 제13조(윤리행동강령)에 의거, 원자력 발전 공공기관인 한국 전력기술은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행동강령을 제정 및 공개 의무화

「원전감독법」 제13조(윤리행동강령)

- ①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해당 기관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하는 윤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한 윤리행동강령을 제정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 ②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임직원은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윤리행동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공직자 행동강령)에 따라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행동강령을 공직 유관 단체의 내부 규정으로 정하도록 규정 명시

나. 한국전력기술 「임직원 윤리행동강령」 주요 내용

| 조 항 | 주 요 내 용 |
|-----------------------------|---|
|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 (5조)차별대우 금지 (6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6조의2)직무관련자에게 협찬 요구 제한 (6조의3)채직 중 취업청탁 제한 (6조의4)외부고객 방문시 청탁물품 사전차단 조치 (7조)인사청탁 등의 금지 (8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9조)부당한 정치개입 금지 (10조)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 (11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
|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 (12조)이권개입 등의 금지 (13조)퇴직자의 취업 제한 등 (14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15조)사적 노무 요구 금지 (15조의2)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16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17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18조)협력업체 대상 윤리 행동기준 |
| 제4장 정보 및 재무관리의 투명성 | (19조)정당하고 투명한 정보의 획득 및 관리 (20조)투명한 회계처리 (21조)정보의 유출 금지 (22조)투명한 정보의 공개 |
| 제5장 건전한 조직풍토의 구성 | (23조)외부강의등의 신고 (23조의2)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23조의3)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24조)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25조)건전한 경조사문화의 정착 (26조)골프 및 사행성 오락행위의 제한 (27조)사조직 결성 등의 금지 (28조)성범죄 행위 금지 (28조의2) 음주운전 금지 |
| 제6장 위반시의 조치 | (29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30조)위반행위의 신고와 처리 (31조) 신고인의 신분보장 (31조의2)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심의회 (32조)수수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 |

- 2013.06.28 : 임직원 윤리행동강령 제정
- 2022.01.01 : 임직원 윤리행동강령 20차 개정
- 2022.02.07 : 임직원 윤리행동강령 21차 개정
- 2022.04.01 : 임직원 윤리행동강령 22차 개정
- 2022.07.15 : 임직원 윤리행동강령 23차 개정
- 2022.10.24 : 임직원 윤리행동강령 24차 개정
- 2022.10.31 : 임직원 윤리행동강령 25차 개정

| 2022년 개정 사항 | | 비 고 |
|-------------|---|--|
| 제 20 차 | ○ 주요 내용 • 직제규정 개정에 따른 부서명 변경 | 제2조 |
| 제 21 차 | ○ 주요 내용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선제 대응을 위한 제도 및 운영 장치 구체적 마련 - 이해충돌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양식 및 점검 의무 신설, 상담 및 직무회피를 위한 상담 양식 추가 | 제2조 제4조 제8조 별지1 별지22 별지23 |
| |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내 금품등 수수 금지 관련 개정사항 반영 - 설날·추석 기간 한정 농수산물·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 상향 운영 | 별표2 |
| | • 외부강의등의 신고 결재권자 변경 및 표현 정정 - 윤리경영담당부서의 협조사항을 기안자 소속 행동강령 책임자로 변경 - 위임전결규정 개정에 따라 결재권자 변경사항 반영 | 제31조 |
| 제 22 차 | ○ 주요 내용 • 직제규정 개정에 따른 부서명 변경 | 제2조 |
| 제 23 차 | ○ 주요 내용 • 직제규정 개정에 따른 부서명 변경 | 제2조 |

| | | |
|--------|---|---|
| 제 24 차 | <p>○ 주요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과 중복되는 이해충돌방지 조항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중복사항인 직무 관련 영리 행위 금지(제10조),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제19조) 삭제 -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중복사항인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제8조), 고위공직자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제9조), 가족 채용 제한(제11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제12조),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제6조의2),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제32조) 삭제 | 제10조 제19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6조의2 제32조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정 내 이해충돌방지 조항 삭제에 따른 용어 정비 및 개념 명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항 삭제에 따른 기존의 용어 설명 조항을 다른 조항으로 이동 - 개념 명확화를 위한 한자 병행 표기 | 제15조의2 |
| 제 25 차 | <p>○ 주요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규정 개정에 따른 직급 명칭 변경 | 제2조 |

□ 임직원 윤리행동강령 공개

- 인트라넷 및 인터넷 홈페이지(지속가능경영-청렴윤리/인권규범)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기관 청렴마당)

라. 「임직원 윤리행동강령」 준수 여부 점검 및 조치

□ 윤리행동강령 준수 여부 점검 : 6회 시행

| 점검 내용 | 점검 항목 | 점검 대상기간 | 조치 내용 |
|--------------------------|--|--------------------------|--------------------|
| 2022년 윤리감사 특정감사 | - 임직원윤리행동강령 개정 및 공개, 준수 위반사항 전반 | 22.1.19. ~ 22.2.9. | ▸ 주의 2건 |
| 설 명절 공직기강 복무감사 | - 금품·향응 수수 등 비위행위 - 업무처리 해태 및 품위훼손 연행 | 22.1.1. ~ 22.4.22. | ▸ 주의 2건 |
| 여름철 공직기강 확립복무감사 | - 관련업체 등으로부터 금품수수 행위 여부 - 직원 상하간 금품 수수 -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점검 | 22.4.1. ~ 22.7.13. | ▸ 주의 2건 ▸ 권고 2건 |
| 직장내 괴롭힘 등 사내질서 문란행위 특정감사 | - 임직원윤리행동강령 중 제36조 (성범죄 행위 금지)위반 여부 | 19.8.9. ~ 22.8.25. | ▸ 정직 1건 |
| 가을철 공직기강 확립복무감사 | - 임직원윤리행동강령 전반 | 22.7.1. ~ 22.10.28. | ▸ 주의 2건 |
| 겨울철 공직기강 확립복무감사 결과보고서 | - 임직원윤리행동강령 전반 | 22.10.29. ~ 22.12.20. | ▸ 주의 2건 |

*상기 '조치 내용' 의 '위반사항 없음' : 행동강령 위반사항인 금품·향응 수수, 음주운전 금지 위반 등의 사례가 없음을 표기

② 제14조(임직원의 재산등록)

가. 관련법령

- 「원전감독법」 제14조(임직원의 재산등록)에 의거 한국전력기술 2직급 이상 임직원은 재산등록 대상

「원전감독법」 제14조(임직원의 재산등록)

- ①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임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은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과 공개에 관련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직자윤리법」을 따른다.

※ 재산등록과 공개에 관한 규정은 「공직자윤리법」을 준용

- 「공직자윤리법」 제3조(등록의무자) 등에 임직원 재산등록 의무 명시

「공직자윤리법」 제3조(등록의무자)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이하 '등록의무자'라 한다)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13. 그 밖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직원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등록의무자)

- ④ 법 제3조 제1항 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8.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원자력 발전 관련 공직유관단체의 2급 이상 직원

- 재산등록의무자 범위 : 임원 → 2직급 이상으로 확대(2014.07.01)

나. 2022년도 재산등록 시행 현황

- 2022년 정기재산 변동 신고 대상자 중 「공직자윤리법」에 의거 재산 신고를 실시하였으며, 재산신고 위반사항 없음

3 제15조(임직원의 취업제한)

가. 관련법령 및 사규

- 「원전감독법」 제15조(임직원의 취업제한)에 의거 재산등록 대상인 한국전력기술 2직급 이상 임직원은 퇴직 후 업무 관련 기관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제한(취업제한 규정은 「공직자윤리법」 준용)

「원전감독법」 제15조(임직원의 취업제한)

- 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 ②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과 관련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직자윤리법」을 따른다.

-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 ① 등록의무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주요 감사내용

- 협력업체 모집심사 시 2직급 이상 퇴직자 고용확인서 의무 징구 여부
- 취업제한 담당 부서의 취업제한 관련 교육 및 안내 시행 여부

다. 감사 결과 및 조치 내용

- 협력업체 모집심사 시 관련 규정에 의거 2직급 이상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 의무 징구 : 시행 중
 - 2022년 2직급 이상 퇴직자 고용 협력업체 : 없음
 - 관련규정 : 협력업체윤리행동강령 제11조/협력업체운영업무절차 별지 제9호

□ 2022년도 정부공직윤리위원회 취업제한 여부 심사 결과

○ 취업제한 여부 심사 4건(심사결과 통보일 기준)

- 2022.01월, 2직급 : 취업 가능
- 2022.02월, 2직급 : 취업 가능
- 2022.02월, 2직급 : 취업 가능
- 2022.11월, 2직급 : 취업 가능

○ 임의취업 일제 조사 점검(2022.04월/10월)

- 점검 위반 해당사항 없음

□ 취업제한 제도 교육 시행(총 2회)

| 교육일자 | 교육대상 | 교육내용 |
|----------|-----------------------|-----------------------------------|
| 2022.11월 | 정년퇴직 2년 전 예정자(87명) | 공직자윤리법 관련 취업제한제도 주요 내용 및 절차 안내 |

□ 퇴직자 취업제한제도 안내 시행(총 1회)

- 2022.02.15. : 회사 홈페이지(www.kepco-enc.com) 내 ‘청렴윤리 유의사항’ 신설 및 ‘청렴윤리 유의사항’ 내 재취업 안내 및 설명자료 첨부 완료

□ 퇴직자 취업제한제도 종합 가이드라인 제·개정

- 2015.06.08 : 퇴직자 취업제한제도 종합 가이드라인 제정
- 2021.06.25 : 퇴직자 취업제한제도 종합 가이드라인 5차 개정
- * 사내 포탈 행정사항 게시 중(2021.06.25~)

4 제16조(부당한 정보제공·이용 금지)

가. 관련법령 및 사유

- 「원전감독법」 제16조(부당한 정보제공·이용 금지)에 의거, 원자력발전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부당한 정보를 제공·이용하는 것을 금지

「원전감독법」 제16조(부당한 정보제공·이용 금지)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임직원은 사적이익을 추구하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운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한국전력기술 「취업규칙」, 「임직원 윤리행동강령」에 임직원이 회사의 기밀누설, 직무 관련 정보를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화

「취업규칙」 제9조(금지사항)

직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재직 중 또는 퇴직 후에 회사의 기밀이나 직무상 취득한 중요사항을 누설 또는 유출하는 행위

「임직원윤리행동강령」 제29조(정보의 유출 금지)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회사의 사전 허가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영업비밀보호관리규정」 제15조(재직 중 영업비밀누설 금지)

- ① 직원은 재직시 취득한 영업비밀을 이 규정에 따라 취급·관리해야 하며 허가 없이 이를 유출·공개 또는 사용할 수 없다.

나. 주요 감사내용

- 부당한 정보제공·이용에 관한 내·외부 제보 및 신고사항 점검(연중)
- 정보관리 취약요소 지속 점검(상시감사 모니터링/자체 감찰 : 수시)
 - 점검 내용 : 문서보안, 정보보안 등 보안관리 실태

다. 감사결과 및 조치내용

□ 부당한 정보제공·이용에 관한 내·외부 제보 및 신고사항

○ 「원전감독법」 제16조(부당한 정보제공·이용 금지) 관련 내·외부 제보/

신고/접수 건 : 없음

□ 정보관리 점검사항

| 점검명칭 | 점검기간 | 점검 내용 | 조치 |
|--------------------|---------------------------|--|---|
| 내부 보안감사 | 22.12.01 ~ 22.12.23 | 기술정보 유출 및 사이버 침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직원들의 생활 보안 준수 여부 확인 | 부서별 취약 항목에 대한 이행조치계획서 징구 및 조치 여부 확인 |
| 불시 보안점검 | 22.01.01 ~ 22.12.31 | 문서방치, 이면지 사용, 캐비닛/서랍 미시건, 저장매체 방치, 보안점검표 확인 등 일반보안 준수 여부 점검 | 일반보안 위반자에 대해 정보보안위규확인서 징구 및 벌점 부과 |
| 용역수행 업체 보안감사 | 22.11.14 ~ 22.11.29 | 용역수행업체를 통한 설계문서 유출 및 보안사고 방지, 보안 활동 및 인식 수준 점검 | 보안활동 미흡 용역수행사에 대해 개선 조치요구 및 이행 여부 확인 |

□ 회사 중요자료 접근 통제, 보안 강화 조치 시행

- 원자로 계통설계 전산화 시스템 적용·운영
- 도면 및 설계문서 관리시스템 적용·운영
- 디지털라이브러리 시스템 적용·운영
- 사이버보안관제실을 통한 자체 보안 관제 실시(2017.01 ~ 현재)
- 대외 보안감사 수검

(국정원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산업부 정보보안 감사, 산업부 국가보안 감사,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취약점 점검 등)

- 내부 보안감사 실시 : 연간 1회 이상(연 1회)
- 불시 보안점검 실시 : 분기별 1회 이상(연 4회 실시)
- 협력업체 보안감사 실시 : 연간 1회 이상(연 1회)
- 기술자료 이용 이력 관제 시스템 운영(2022년)
 - 특이 접속자 검출 후 사업 PM 및 해당 부서장에게 통보
 - 재직자 814건 및 퇴직예정자 288건 통보 및 부정 사용 사항 등 검토

| | |
|-------|---------------------------------|
| 검토 결과 | • 재직자 상반기 406건, 하반기 408건 : 이상없음 |
| | • 퇴직예정자 288건 : 이상 없음 |

5 제17조(영리 업무의 금지)

가. 관련법령 및 사규

- 「원전감독법」 제17조(영리 업무의 금지)에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임직원은 직무 외 영리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에는 징계하도록 명시

「원전감독법」 제17조(영리 업무의 금지)

- ①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임직원은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제2호 및 제3호 생략 …)
- ② 원자력발전공공기관 임직원과 「공직자윤리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이해관계자는 해당 임직원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의 주식 취득 및 보유 등 해당 사기업에 대한 투자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임직원에게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 한국전력기술 「정관」, 「취업규칙」 및 「임직원윤리행동강령」 등에 영리 업무 금지사항을 명시

「취업규칙」 제9조(금지사항)

직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회사의 허가 없이 자기 사업을 영위하거나 타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행위 등 회사업무와 관련 없는 일을 하는 행위(휴직 중 포함)

「취업규칙」 제13조(회사 업무에 종사)

직원이 취업기간 중 회사업무와 관계없는 일을 할 경우에는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직원윤리행동강령」 제20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주요 감사내용

- 임직원의 영리 행위는 그 사실 여부 확인이 어려워 내·외부 제보나 신고 등 다양한 탐지 채널을 활성화하여 운영
 - 회사 신고시스템(신문고/레드휘슬) 및 신고자 보호제도를 통한 내·외부 신고 활성화
- 인사담당부서의 회사업무 외 종사 승인 관련 업무 수행현황 및 영리 행위 금지에 대한 주기적인 안내 여부 등 점검

다. 감사 결과 및 조치 내용

- 「원전감독법」 제17조 관련 내·외부 제보/신고접수 건 : 없음
- 정규직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회사업무 외 종사 승인 및 영리행위 금지 관련 안내 메일 발송(2022.01.03)
- 전 직원을 대상으로 회사업무 외 종사 승인 및 영리 행위 금지 관련 안내 메일 발송(1/4/7/10월)
- 회사업무 외 종사는 인사담당부서에서 사전 협조 승인

| 회사업무 외 종사 | 2022년 승인 건수 |
|----------------------|-------------|
| 대학 출강 승인(인사처 승인일 기준) | 1건 |

※ 겸직 신청 및 허가 내역

| 겸직 신청 사항 | 2022년 승인 건수 |
|-------------------------------|-------------|
| 사외이사 등 외부위원 위촉 승인(인사처 승인일 기준) | 28건 |

6 제18조(협력업체의 행위제한)

가. 관련법령 및 사규

- 「원전감독법」제18조(협력업체의 행위제한)에 협력업체의 뇌물공여 등 행위 제한 사항을 명시하고 해당 행위 업체는 등록취소 등 제재

「원전감독법」 제18조(협력업체의 행위제한)

- ① 협력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물품등을 공급함에 있어 뇌물을 약속, 공여 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운영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여 이용하는 행위
 3. 원자력발전사업자등에 공급하는 물품등의 성능을 증명하는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행위
 4. 제15조 제1항에 따라 취업이 금지된 원자력발전공공기관 퇴직자를 고용하는 행위
 5. 그 밖에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물품등을 공급함에 있어 원자력발전소 건설·운영 과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협력업체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업체에 대하여 등록취소 또는 입찰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 협력회사가 준수해야 할 윤리적, 사회적 행동 기준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협력업체 윤리행동강령」 제정('13.06.28)

「협력업체 윤리행동강령」

제4조(금품·향응 등을 주는 행위의 제한)

한전기술 임직원에게 어떠한 형태의 금품이나 향응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불법행위의 제한)

한전기술의 내부정보를 유출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주식투자 등의 이득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주요 감사내용

- 「협력업체 윤리행동강령」 위반 여부는 그 사실 여부 확인이 어려워
검찰 기소 및 내·외부 제보나 신고 등을 활성화
- 협력업체 등록 시 '협력업체 행동강령 준수서약서' 징구 여부
- 협력업체 점검을 통한 청렴 및 윤리실태 조사

다. 감사결과 및 조치내용

- 「협력업체 윤리행동강령」 위반 : 없음
- 「협력업체 윤리행동강령」 위반 신고 접수 건수 : 없음
- 협력업체 등록 시 윤리행동강령 준수서약서 징구 현황
 - 2022년도 의무모집 선정 및 협력약정 체결업체 : 2개 업체
 - 2022년도 협력업체 갱신심사 적격업체 : 61개 업체
- 협력업체 등록 시 인권경영이행 서약서 징구 현황
 - 2022년도 의무모집 선정 및 협력약정 체결업체 : 2개 업체
 - 2022년도 협력업체 갱신심사 적격업체 : 61개 업체

Ⅲ

2023년도 윤리감사 계획

1 2022년도 윤리감사 추진방향

□ 내·외부 환경 및 감사역량 점검을 통한 SWOT 분석

| | | |
|---|---|---|
| 외부·내부환경 감사역량 | 강점 S · 감사조직 인력 전문성 및 취약분야 감사인 충원 등 노력 인정 · 내부통제에 대한 3중 방어체계 운영 · 기관의 적극적인 내부통제 활동 노력 인정 · 감사만족도 조사 시 감사 결과에 대한 임직원의 긍정적 인식 | 약점 W · 고위험 분야 IT 보안, 회계부정, 불공정거래, 갑질근절 등 감사사항 선정 필요 · 사회적책무 점검 확대 필요 · 소극행정 및 적극행정을 위한 사전 컨설팅과 적극행정 면책 등의 활성화 필요 · 리스크 기반 감사를 위한 유사사례 재발 방지 필요 |
| | 기회 O · ESG경영체계 확립 등 강화 · 기관의 불필요한 규제혁신 인식 증대 · 인적자원 전문역량 고도화 필요 · 리스크 기반 관리체계 강화 경영 전략 구성 · 공공부문의 IT 기술 활용 증가 | SO · 현업 기반 리스크 관리체계 고도화 · ESG 및 사회적 책임 점검 강화 · 국제기준 감사품질 강화 · IT기반 감사 활동 체계화 |
| 위협 T · 사회적가치 성과창출 요구 · B2B 사업으로 제한된 대국민 접점 · 기관의 방만경영 관리 강화 요구 · 기관의 윤리·안전 관련 강화 요구 · 높은 기술보안 수준 요구 | ST · 이해충돌 등 방만경영 근절 필요 · 전문 감사인 육성 노력 · 임직원에 부응하는 감사 역량 구축 · 철저한 감사윤리 기준 준수 노력 | WT · 사회적 책무 위반방지 필요 · 사회적가치 성과창출 노력 · 임직원이 체감하는 감사품질 혁신 필요 · 비효과적 규제 타파 및 적극적 업무 지원 필요 |

□ 감사전략 및 세부 추진과제

| | | | | |
|--------------|--|-----------------|-------------------|----------------|
| 기관 미션 | 친환경 에너지 기술을 기반으로 미래 에너지 산업을 선도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 | | |
| 감사 미션 | 국가 에너지산업 선도 및 국민 삶에 기여하는 공정한 감사 | | | |
| 감사 비전 | 경영활동의 “생산적 대안제시”, 내부통제의 “감사역량 증진”, 공공기관의 “건전한 조직문화 선도” | | | |
| 감사 방침 | 감사인이 헌신하는 감사 | 임직원이 신뢰하는 감사 | 회사 사명에 부응하는 감사 | 국민이 공감하는 감사 |

| | | | | |
|-------------|------------------------------|-----------------------------------|--------------------------|------------------------------------|
| 전략방향 | 확실한 감사성과 창출 확실한 감사인 보호·보상 | 일하는 문화를 지원하는 든든한 감사 이미지 재창출 | 위험요인으로부터 임직원과 국가자산 보호 | 선제적 예방감사를 통한 공정가치 실현 |
| 전략과제 | 노력하고 부응하는 감사 역량체계 구축 | 불합리한 규제 타파 및 적극업무 지원 | 리스크 기반 감사체계 고도화 | 국민 공감 감사 확대 및 감사 소통 강화 |
| | 제3의 눈, 외부전문가 활용체계 고도화 | 임직원 맞춤 소통 및 감사 만족도 제고 | IT 기반 감사 강화 | ESG·준법· 청렴문화 선도 |
| | 타협하지 않는 장기근속 전문 감사인 육성 | 임직원이 체감하는 감사품질 혁신 | 방만경영 근절 | 사회적책무 위반 방지 및 사회적가치 성과 창출 기여 |

② 2023년도 주요 감사계획

□ 종합감사 및 특별감사 등을 통한 윤리감사 사항 점검

| 순번 | 감사유형 | 감사사항 | 연인원 | 수행팀 | 일정 |
|-----------|------------------------------------|---------------------------|--------------|------------|-------|
| 1 | 종합감사 | 자회사 운영 종합감사 | 80MD | 종합감사팀 | 4월 |
| 2 | 재무감사 | 2022 회계연도 결산감사 | 20MD | 일상감사팀 | 2~3월 |
| 3 | 특정감사 | 2023년 윤리감사 | 30MD | 반부패 감사팀 | 3~4월 |
| 4 | | 안전관리 실태 특정감사 | 42MD | 감사기획팀 | 5~6월 |
| 5 | | 협력업체 부패 취약분야 실태점검 특정감사 | 30MD | 반부패 감사팀 | 8~10월 |
| 6 | | 내부통제 체계 적정성 진단 특정감사 | 20MD | 일상감사팀 | 9~10월 |
| 7 | 성과감사 | 전문 경험·기술 전수체계 성과감사 | 30MD | 종합감사팀 | 10월 |
| 8 | |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 성과감사 | 60MD | 종합감사팀 | 4~6월 |
| 9 | 복무감사 | 공직기강 및 임직원윤리행동강령 복무감사 | 84MD | 종합감사팀 | 분기별 |
| 기타 | 감사 특명사항 및 수시 발생 건 (특정감사 및 조사 등) | | 204MD | 전팀 | 연중 |
| 합계 | | | 600MD | | |

※ 상기 감사일정/항목은 긴급사항 발생 및 대외감사 수감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감사 특명사항 및 수시 발생건은 연중 계획 외 감사 또는 조사로 수행

1 내부감사 실적

| 구분 | 감사종류 또는 감사기관 | 계획 (계) | 실적 (계) | 처분요구 건수(건) | | | | | | | | | | | | 신분상 조치인원(명) | | 재정상 조치 금액 (백만 원) |
|----------|--------------------|-----------|-----------|------------|----|----|----|----|-----|----------|----|----|----------|----------|----|----------------|----------|------------------------|
| | | | | 총 건수 | 징계 | 변상 | 시정 | 개선 | 권고 | 경고 주의 | 통보 | 고발 | 모범 사례 | 현지 조치 | 면책 | 징계 | 경고 주의 | |
| 내부 감사 | 종합감사 | 1 | 1 | 25 | 1 | - | 4 | 3 | 6 | 2 | 9 | - | - | - | - | 22 | 31 | - |
| | 재무감사 | 2 | 2 | 11 | - | - | 6 | 1 | 1 | - | 3 | - | - | - | - | - | - | 108 |
| | 특정감사 | 4 | 11 | 56 | 4 | - | 2 | 17 | 10 | 11 | 9 | - | 1 | 2 | - | 4 | 30 | - |
| | 복무감사 | 1 | 4 | 10 | - | - | - | - | 2 | 8 | - | - | - | - | - | - | 87 | - |
| | 성과감사 | 2 | 2 | 6 | - | - | - | 3 | - | - | 2 | - | 1 | - | - | - | - | - |
| | 소 계 | 10 | 20 | 108 | 5 | - | 12 | 24 | 19 | 21 | 23 | - | 2 | 2 | - | 26 | 148 | - |
| | 일상감사 | - | 1,086 | 391 | - | - | - | - | 391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10 | 1,106 | 499 | 5 | - | 12 | 24 | 410 | 21 | 23 | - | 2 | 2 | - | 26 | 148 | - |

- 내부감사(자체감사) 실적 : 총 20건, 처분요구 총 108건
- 일상감사 실시 총 1,086건, 의견서 발행 건 총 391건(36%)
- 처분요구에 대한 조치이행 100%

2 외부감사 실적

| 구분 | 감사종류 또는 감사기관 | 계획 (계) | 실적 (계) | 처분요구 건수(건) | | | | | | | | | | | | 신분상 조치인원(명) | | 재정상 조치 금액 (백만 원) |
|----------|--------------------|-----------|-----------|------------|----|----|----|----|----|----------|----|----|----------|----------|----|----------------|----------|------------------------|
| | | | | 총 건수 | 징계 | 변상 | 시정 | 개선 | 권고 | 경고 주의 | 통보 | 고발 | 모범 사례 | 현지 조치 | 면책 | 징계 | 경고 주의 | |
| 외부 감사 | 감사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무부처 | - | 1 | 1 | - | - | - | - | - | 1 | - | - | - | - | - | - | 1 | - |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1 | 1 | - | - | - | - | - | 1 | - | - | - | - | - | - | 1 | - |